

대구광역시 달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93
----------	------

제출일자 : 2017. 12.

제출자 : 달성군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온천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온천개발 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의 업무가 발생되면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종결 시에는 해산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이고 실효성 있게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온천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안 제1조)

- 온천법시행령 제6조에서 제11조로 변경

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3조)

-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자문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가 종료될 때에는 자동 해산

다.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안 제4조)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띄어쓰기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온천법시행령」 제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4)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7. 11. 3. ~ 11. 23.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6) 비용추계서 : 생략

대구광역시 달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온천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를 “「온천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로 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3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사항이 발생되면 구성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자문 또는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가 완료된 때 자동 해산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9조 중 “기타”를 “그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이 조례는 「온천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 <u>대구광역시달성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 -----</p> <p>제2조(기능)①위원회는 ----- ----- 1~5 (생략) 6. <u>기타</u> 온천의 -----</p> <p>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생략)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4(생략) 5. <u>기타</u> 위원장이 -----</p> <p>④(생략) <u><신 설></u></p>	<p>제1조(목적)이 조례는 「온천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 <u>대구광역시달성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u> -----</p> <p>제2조(기능)①<u>대구광역시달성군온천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는 ----- ----- 1~5 (생략) 6. <u>그 밖에</u> 온천의 -----</p> <p>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현행과 같음)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4(현행과 같음) 5. <u>그 밖에</u> 위원장이 ----- 이 경우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달성군양성평등기본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p> <p>④(현행과 같음) ⑤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사항이 발생되면 구성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자문 또는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가 완료된 때 자동 해산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① 제3조제3항제2호, 제3호, 제5호 해당자는 2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위촉할 수 있다.</p> <p>② 제3조제3항제1호 해당자는 임기기간, 제4호 해당자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p>	<p><삭 제></p>
<p>제9조(운영규칙) 위원회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p>	<p>제9조(운영규칙) 위원회의 운영 및 그 <u>밖</u>에 필요한-----</p>

□ 「온천법시행령」 제11조

제11조(온천개발자문위원회) ① 법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법 제21조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등 온천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2.13.>

②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